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제46회기 뉴욕 교협 목사 부회장에 당선됐다. 문목사는 12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개최된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79%의 지지를 얻었다. 재석 총대 58명 중에서 46명이 문석호 목사를 지지했다. 반대표는 9표, 무효표는 3표였다.



뉴욕교협 제46회기 이사장 및 회장단. 왼쪽부터 이사장 김영호 장로, 회장 양민석 목사, 목사 부회장 문석호 목사, 평신도 부회장 손성대 장로.

## 뉴욕교협 제46회기 목사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참관기

# ‘법’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나?

김동욱 목사 <‘복음뉴스’ 발행인>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제46회기 뉴욕 교협 목사 부회장에 당선됐다.

문석호 목사는 12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개최된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79%의 지지를 얻었다. 재석 총대 58명 중에서 46명이 문석호 목사를 지지했다. 반대표는 9표, 무효표는 3표였다.

예상대로 회의 내내 소란스러웠다. 소란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 특정인의 출마를 어렵게 만든 선거 세칙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환 목사는 자신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조항이 선거 세칙에 포함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후보 등록 공고가 나자마자 서둘러서 해당 선거를 준비해야 했다.

면서 법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어거지가 회의를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서류 미비를 이유로 부회장 후보가 되지 못한 김영환 목사가 임시총회가 있기 며칠 전(12월 4일)에 기자 회견을 열어 주장한 대로, 제48회기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세칙 중 “CPA가 공증한 2년간 재정 결산서”는 분명 특정인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나쁜 조항이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 한번 제정된 법은, 그 법이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김영환 목사는 자신의 출마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조항이 선거 세칙에 포함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후보 등록 공고가 나자마자 서둘러서 해당 선거를 준비해야 했다.

김명옥 목사는 선거 세칙에 ‘CPA가 공증한 2년간 재정 결산서’ 요구 조항을 포함한 것은 모범(대뉴욕지구한인교협협의회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 그렇지 않다. 헌법 제24조 8항은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법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시

행세칙을 정하여 공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뉴욕지구한인교협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19조는 ‘본 선관위의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초안을 작성하여 법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PA가 공증한 2년간 재정 결산서’ 요구 조항이 특정인의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조항이라 할지라도, 해당 조항이 실행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후보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가 한 사람이나 투표를 하지 말고 박수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전 회장이 있었다. 이 의견에 누군가가 “재정이오!”라고 외치자, 김영환 목사가 “법이요!”라고 외쳤다. 그러자 “투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법을 자세히 모르고 한 발언이었다. 뉴욕교협 헌법 제24조는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석자 1,000명 중 999명이 박수로 추대하고 해도, 1명이 “법이요!”를 외치면 법대로 투표를 해야 하

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다.

뉴욕 교협의 회의 때마다 “총회가 결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 회장이 있다. 이 주장은 법과 상충되는 말이다. 법은 제정되면, 그 법을 제정한 기관도 구속한다. 대한민국의 국회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었다. 그 법에 대한민국 국회도 당연히 구속된다. 그 자리에서 국회가 결의해서 그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총의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의 규정과 다르게 ‘총의에 따라’ 하려면, 먼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해서 해야 한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재석 인원을 확인해야 했다.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뉴욕 교협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는 58명이었다. 58명의 반은 29이니 과반수(반을 넘은 수)는 30이다. 그런데 “29가 과반수”라고 주장한 전 회장이 있었다.

긴 소란 끝에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의 당선이 공고되었다. 부회장 문석호 목사는 “회장을 도와 줄은 목사들이나 상식을 가진 목사들이 볼 때 교협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 대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겠다. 무익하게 돈이나 쓰고 비생산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열심히 하도록 돋는 것이 교협의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연합으로 하

는 것이 교협의 본래 목적인 줄 안다. 힘쓰고 애를 쓸 것”이라고 당선 인사를 했다.

뉴욕교협 제46회기 부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의장 양민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장 양민석 목사의 인사, 전 회장 이재덕 목사의 기도, 서기 문정웅 목사의 회원 점명, 의장 양민석 목사의 개회 선언, 회순 채택, 서기 문정웅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 선관위원장 한재홍 목사의 보고 및 입후보자 소개, 고성이 오간 설전,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의 소견 발표, 전 회장 송병기 목사의 기도, 선거 실시, 당선자 발표, 신임 부회장 문석호 목사의 인사, 종무 이창종 목사의 광고, 전 회장 정순원 목사의 폐회 기도, 의장의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동원 기획분과 김경열 목사가 인도했다.

북도, 친송가 23장 ‘만임이 내게 있으면’, 뉴욕 목사회장 이준성 목사의 기도, 회계 이광모 장로의 성경봉독, 전 회장 이만호 목사의 설교, 한국을 위한 통성기도, 친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회장 신현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만호 목사는 이사야 61장 1-11절을 본문으로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